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35호
2.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1. 8. 18.

II . 제안이유

- 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계획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불법촬영 신고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최기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635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¹⁾하는 등 학교현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1] 2015~2018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발생 현황²⁾

(단위 : 건)

| 구분 | 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015 | 77 | 18 | 21 | 3 | 2 | 6 | 1 | - | 7 | 2 | - | 2 | 3 | 1 | 4 | 4 | 3 |
| 2016 | 86 | 7 | 25 | 5 | 19 | 6 | 2 | 3 | - | 6 | 2 | 5 | | 1 | 3 | 1 | 1 |
| 2017 | 115 | 19 | 37 | 7 | 5 | 6 | 4 | 1 | 3 | 8 | 6 | 7 | 2 | 1 | 4 | 5 | - |
| 2018 | 173 | 29 | 53 | 7 | 5 | 8 | 5 | 10 | 8 | 8 | 9 | 6 | 9 | 4 | 5 | 7 | - |
| 계 | 451 | 73 | 136 | 22 | 31 | 26 | 12 | 14 | 18 | 24 | 17 | 20 | 14 | 7 | 16 | 17 | 4 |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총 451건으로,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73건의 촬영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촬영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 보도자료 :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서울교육청, 뒤늦게 퇴출(연합뉴스, 2021.7.29.)

2) 박찬대 국회의원 요구자료(2020.7.)

- 이에 2018년 6월 경찰청·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등 5개 정부관계부처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탐지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³⁾
- 그리고 2020년 7월 교육부는 동 대책으로 보급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전국 학교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⁴⁾

[표-2] 교육부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 전수점검 결과(서울시교육청)

| 점검 일자 | 학교급 | 점검 학교 수 | 불법촬영 카메라 | 탐지장비 보유 수 |
|-----------------|-------------|---------|----------|-------------------------------|
| '20.7.20.~8.21. | 초·중·고·특수·각종 | 1,352 | 없음 | 60대 (교육지원청 47대, 학교 13대) |

- 이러한 면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현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기관 내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점검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전문 인력 확충(안 제6조), 신고체계 마련(안 제7조), 실태조사

3) 보도자료 :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6.15.)

4) 보도자료 : '교내 불법 촬영물 막아라'...교육부, 전국 초중고 긴급 전수점검(경향신문, 2020.7.14.)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규정하여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천명하고 학교별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표-3] 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상시 점검 체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주기) 연 2회 이상 점검- (학교)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점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p><점검 방식 예시></p><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지원청 및 유관기관(경찰서, 행정구청 등)에서 대여☞ 인력: 학교 자체 인력 및 유관기관(자치구, 경찰서 등)에 협조 요청☞ 용역: 전문기관에 별도 의뢰(학교 용역계약으로 추진)하여 점검<p>※ 학교예산에 소요경비 편성</p></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표본학교 선정 및 불시점검 |
|--|

-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불시점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추진과제

| 핵심과제 | 주요 추진과제 |
|-------------------------------------|---|
| <p>I.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p> | <p>①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정책 추진 ②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활성화 ③ 교원 성인지력 향상 및 학교 성평등 교육 강화</p> |
| <p>II. 평등과 존중 기반의 성교육 내실화</p> | <p>① 학교 성교육 내실화 지원 ②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③ 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p> |
| <p>III.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p> | <p>①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활성화 ② 성폭력 신고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 ③ 스쿨미투 발생학교 공동체 회복교육 운영 ④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p> |

[표-5] 서울시교육청 불법촬영 불시점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간 : 2021. 6. ~ 9. - 점검대상 : 35교* * 33교 [11개 교육지원청 * 3교(초·중·고 각 1교)] + 2교 (특수·각종 각 1교) - 학교선정 :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과 협의하여 선정 - 점검범위 :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가능성 높은 장소 - 점검방법 :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용역)하여 실시 |
|--|

○ 또한 2021년 5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불법카메라 점검 방법을 수록하여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붙임] 참조).

○ 안 제4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대응 및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3)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확인·점검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⁵⁾

현재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⁶⁾

[표-6]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 | |
|---|
| - 점검기간 : 2021. 8. 16. ~ 9. 30. |
| - 점검대상 : 1,360교(관내 초 604교, 중 388교, 고 320교, 특수 32교, 각종 16교) |
| - 점 검 반 :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성폭력담당 경찰관 31명 |

○ 안 제10조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화장실 불법촬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① 유관기관*에 점검 장비, 인력 등 점검 지원 및 점검 활동 협업 요청

* 유관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25),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31)

②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제안 :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6) 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경찰청,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위해 1360개교 합동점검(뉴스스, 2021.8.5.)

관계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붙임]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중 불법카메라 점검 방법 안내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12.18.) 일부 발췌

□ 점검방법

○ 점검 사전준비

- 입구에 안내표지판("점검중")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점검방법

- 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를 활용해 점검
- 탐지기 장단점에 따라 병행 운영 권장(예, 전파 + 적외선탐지기)

* 전파탐지기 : 전파를 발사한 다음 그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

* 렌즈탐지기 :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 소등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



< 집중점검 사항 >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
 -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
 - ※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요청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 | | |
|--|---|--|
| 쓰레기통('15.04, oo대학교) | 천장('16.01, 민간기업) | 환풍구('15.18, 해외 호텔화장실) |
|  |  |  |
| 변기뚜껑('17.09, 민간기업) | 쓰레기 봉지('14.08, 일반음식점) | 벽체('18, ooo역) |
|  |  |  |

- (1단계) 육안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점검

| | |
|---|--|
| 의심흔적1 | 의심흔적2 |
|  |  |

- (2단계)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 (3단계)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 | |
|---|--|
| 전 파탐지(2단계) | 렌즈탐지(3단계) |
|  |  |

○ 점검 시 체크사항

- 불필요한 물건(예, 텀블러 · 종이컵 등 화장실에 있기는 이상한 물건)은 꼭 확인한다.
- ① 전원을 켜다. → ② 화장실 문 안쪽을 점검한다. → ③ 변기 커버를 점검한다. → ④ 휴지걸이를 점검한다. → ⑤ 휴지통을 점검한다. → ⑥ 콘센트를 점검한다. → ⑦ 전기장치 점검한다. → ⑧ 휴지통치 등을 점검한다. → ⑨ 변기 뒤쪽을 점검한다.

□ 주요 탐지장비 현황

| | | | | |
|---------------------|---|--|--|---|
| <p>사 진 (예시)</p> |  <p><전파 활성 탐지기></p> |  <p><렌즈탐지기></p> |  <p><적외선탐지기></p> |  <p><영상카메라탐지기></p> |
| <p>특 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창기 많이 사용 ◦ 전기 끄고 사용해야 효과적 ◦ 전기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로서 현재 많이 사용 ◦ 노출된 렌즈카메라 탐지 ◦ 렌즈가 코팅된 카메라는 탐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팅된 렌즈카메라 및 위장된 카메라 탐지 ◦ 유무선카메라 탐지 하며 꺼져 있어도 탐지 ◦ 거울 등 유리재질 탐지시에는 각도를 비스듬히 조절 하면서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내용을 눈으로 확인 가능 ◦ 자체 메모리저장 카메라 탐지못함 ◦ 무선기능만 탐지 가능하고 디지털 기능은 탐지 못함 |
| <p>고려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유 불법촬영 탐지기의 성능 수시 업데이트 ◦ 불법촬영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로 탐지장비 추가 확보 | | | |

※ 위 사진에 제시된 탐지기 종류는 특정제품 홍보용이 아닌 참고 자료임.

□ 점검결과 조치

○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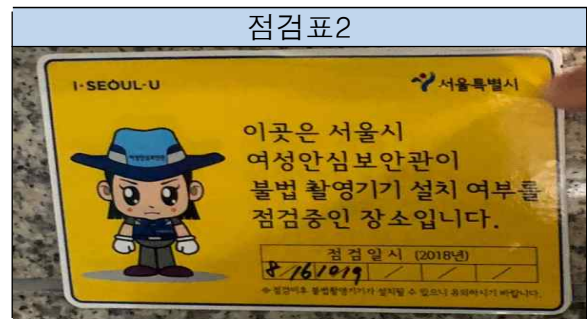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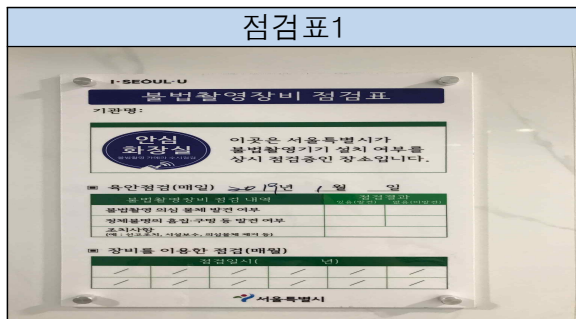
*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 의심흔적이 있는 경우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의심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의심흔적에 대해 보수 요청

○ 점검표 작성

- 점검 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 기재



<점검표(예시)>

|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 | 점검결과(이상유무) | | | |
|--------------------|------------------------|-------------------|-------------------|-------------------|-------------------|
| | | 점검일자 (20.4.8.) | 점검일자 (. . .) | 점검일자 (. . .) | 점검일자 (. . .) |
| 육안 점검 (매일) | 의심흔적(흠집·구멍 등) 발견 여부 | (O or X) | | | |
| | 불법촬영 의심물체 발견 여부 | X | | | |
| 탐지 장비 점검(매주) 이상 유무 | | O | | | |

※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